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국 가 균 형 발 전 특 별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역의 주된 산업의 위기로 인해 지역경제 여건이 악화된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은 최근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이 해당 지역의 산업·경제 회복도와 부합하도록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1회 연장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총 지정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15조의12 제2항 개정 및 제3항·제4항 신설).

2. 주요내용

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연장제한 삭제 및 총 지정기간 확대(안 영 제15조의12제2항 개정 및 제3항·제4항 신설)

- 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기간 만료시점에 해당 지역의 산업·경제 회복정도를 평가하여 지정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1회 연장 제한 규정을 삭제
- 2) 최초 지정기간을 포함한 전체 지정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확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12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 만료시점에 해당 지역의 산업·경제 회복정도 등을 평가하여 지정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지정기간을 포함한 전체 지정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15조의12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의 연장은 제15조의11제3항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15조의12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그 밖에 지정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의12(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기간) 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기간은 최대 2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제15조의12(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 지정 기간 만료시점에 제15조의11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조의11제3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 ----- -----의 지정기간 ----- - 해당 지역의 산업·경제 회복 정도 등을 평가하여 지정기간 ----- ----- 연장할 수 있다. ----- 최초 지정기간을 포함한 전체 지정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의 연장은 제15조의11제3항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신 설>	④ 그 밖에 지정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